[서식8]

협상에 의한 계약 사유서

계 약 명	낙동강수계(대구 · 경북권) 완충저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개선
소요예산	금 4,098,300,000원(금 사십억구천팔백삼십만원) / 부가세 포함
법적근거	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· 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<u>전문성 · 기술성 · 긴급성, 공공시설물의 안전성</u>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사 유	□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 사고 발생 시 공공수역을 보호하는 핵심 시설로 차집부 수질모니터링 및 저류시설 등이 상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함 ※ (관련근거)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6(완충저류시설의 설치·운영기준)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(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8호) □ 본 사업은 완충저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및 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해 본래 기능 수행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,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개선을 통해 시설 정상운영 및 공공수역 수질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□ 또한, 본 사업은 수질계측, 기계설비, 통신 및 제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구축되어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른 맞춤형 구성이 필요하여 종합적인 업무 수행 능력의 확보가 필요함 □ 따라서, 기술력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「협상에 의한 계약체결」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함
낙찰자결정방법 변경 사유	-

2026년 7월 21일

담당 성명 조 현 준 (서명)

부장 성명 이 탁 수 (서명)

부서장 성명 서 성 철 (서명)

상기와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 사유서를 제출합니다.